

# 日帝의 植民地政策

金 雲 泰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 The Japanese Colonial Policies in Korea

Woon-Tai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author's recent book on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this article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formulation, development, and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Divid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to the four stages of preparation (1905~1910), formulation (1910~1919), appeasement (1919~1931), communications basing & wartime mobilization (1931~1945), the author tried to outline the policies of each perio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lonial policies and their impacts on the post-emancipatory politics and administration of Korea are examined.*

### 1. 序 論

日本의 對韓侵略은 먼 옛날부터 있어 왔다. 가까이는 1592년의 壬辰倭亂이 있었으며 近代에 들어와서는 1876年 江華島侵犯으로 「修好條約」이란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1905年 乙巳保護條約까지를 日本의 韓國侵略의 前期라 한다면 1905年부터 1945年 終戰까지의 植民統治期間은 그 後期라고 할 수 있겠다. 本 論文은 주로 後期에 해당한 것이다.

1876년 불평등조약인 ‘丙子修好條約’의 강요로 시작된 日帝의 침략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더욱 심화되어 韓半島를 둘러싼 世界帝國主義 權力構造의 재편을 계기로 마침내 大韓帝國은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支配體制로의 편입이 강요되기에 이르렀다.

즉 露日戰爭 발발과 함께 日本軍의 不法占領 下에서 1904년(光武 8년) 2월에 「韓日議定書」가 강제 調印되고 또 露日戰爭이 종결되면서 英美 등 列強의 支援 下에서 1905年 11月에 乙巳保護條約이 강제 締結된데 뒤이어 1910년의 소위 「韓日合併條約」이 強壓과 陰謀로 結末지워짐으로써 日帝의 植民化가 사실상 완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韓日 兩國間에 맺어진 소위 「條約」은 그 合意過程의 본질적 하자로 인해 國際法上 무효이므로 舊韓國인 大韓帝國은 國家로서 그대로 존속한 것이며 다만 당시 日帝의 사실상의 軍事占領으로 인하여

그主權行使가 정지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3·1獨立運動을 계기로 亡命政府로서 大國民國臨時政府를 세움으로써 大韓帝國을 復國하여 國脈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sup> 따라서 日帝殖民統治時代에도 國家의 正統性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다만 ‘毀損’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民族主體性이나 國家正統性과 같은 民族的 規範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歷史의 계승·발전과정에서 日帝殖民統治時代는 그 시간적 성격으로 보아 외관적이나마 傳統的 秩序에서 近代的 秩序에로의 이행이라는 意義를 지닌 것이었다. 또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近代國家의 體驗이라는 또는 近代的 秩序의 制度化라는 社會變動의 다른 하나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要因들이 해방 후의 政治·行政·經濟·社會·文化 등 여러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서 그後遺症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추적·검토할 필요성은 대단히 큰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本論文에서는 日本帝國主義의 形成과 展開 및 그 本質을 간단히 살펴고 日帝殖民統治의 時期를 準備期(1905~10), 形成期(1910~19), 懷柔調整期(1919~31), 兵站基地化 및 戰時動員期(1931~1945)로 區分하여 각時期의 政策을 要約한 다음 日帝殖民政策의 特性과 그後遺症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日本帝國主義의 形成과 展開

明治維新 이후 日本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開化되어 近代資本主義화에 돌입했고 유럽식近代國民國家를 수립하고 近代의 軍隊와 官僚機構를 형성하여 對外侵略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반하여 朝鮮과 中國은 아직近代國民國家를 이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이것은 日本軍國主義가 朝鮮과 中國을 侵略할 수 있게 한 하나의 國際的 條件이었다. 그리고 明治政府는 安政 5個國(美·英·露·佛·蘭)<sup>2)</sup>과의 강요된 不平等條約들을 改正하기 위하여 歐美列強의 아시아 侵略에 편승 내지 그下手人이 됨으로써 스스로의 침략적 야망을 實現하면서 列強의 호의로 不平等條約 改正도 실현시켜 보자는 심산이 있었다. 또한 舊武士階級인 不平士族<sup>3)</sup>들의 불만을 海外侵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도 列強의 侵略戰爭에 편승하려는 政治的 計略도 작용한 것이다. 그日本이 歐美列強과의 不平等 和親條約을 強要당함으로써 입은 交易上의 損失을 만만하게 보인 朝鮮, 中國 등을 복속시켜 차취

1) 이러한 觀點은 다음 論文 참고. 金東熙,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관한 法的 根據”, 國土統一院編, 「民族史의 正統性 研究論叢」, 서울: 國土統一院, 1976, pp. 365-94; 洪淳鈺, “民族主義政治와 正統性: 3·1運動과 臨時政府를 중심으로”, 上揭「民族史의 正統性 研究論叢」, pp. 177-91.

2) 1858년 6月에 英·佛이 清國에 강요한 天津條約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內容은 自由貿易規程을 핵심으로 하고 일방적인 領事裁判權(實質上 治外法權), 協定稅率, 最惠國待遇 등이 규정되었다.

3) 1869年の 版籍奉還, 1871年の 廢藩置縣, 1872年の 國民皆兵制, 1873年の 屢刀令 등의 단행으로 士族은 失職하고 그不滿을 海外로 풀리게 하려고 ‘征韓論’이 나왔으며 一連의 反政府運動으로 번졌다.

해서 報償을 찾으려는 弱肉强食의 侵略根性도 작용하였다.<sup>4)</sup> 나아가서는 당시 歐美列強을 순방한 指導層의 英美승배의 事大主義的 思考方式도 侵略外交로 나가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明治政府가 첫 侵略對象으로 삼은 것이 이웃나라 朝鮮이었다. 朝鮮은 地理的으로나 歷史的으로 侵略主義의 偏見이 뿌리깊이 溫存한데다가 당시 朝鮮의 ‘開放’을 획책하고 있던 美國의 朝鮮侵略에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美國은 美國대로 明治政府의 侵略性, 反動性을 그들의 아시아侵略에 이용하기 위하여 日本을 西歐列強의 동맹자로 육성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sup>5)</sup> 뿐만 아니라 英美를 선두로 하는 歐美列強은 항상 南侵의 야욕을 품고 있던 帝政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日本軍國主義의 朝鮮·中國侵略을 지원하고 또한 아시아諸民族의 反侵略運動이 격화하면 이를 진압하는데 日本을 적극 이용하려 한 것이다. 日本은 이와 같은 特殊한 그리고 有利한 條件에 힘입어 그 經濟的能力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植民地領有가 가능했고 日本資本主義를 단시일 내에 비약적으로 發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日本資本主義가 獨占段階에 돌입한 20세기 초는 日本帝國主義가 成立된 시기이며 露日戰爭을 거쳐 第1次世界大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通說이 되고 있다. 그리고 日本帝國主義의 形成에 있어서는 日本의 조속한 獨占資本의 形成과 그것을 기반으로 國家權力과 유착한 帝國主義資本家의 市場獨占의 야망, 그리고 日本의 絶對主義 天皇制 고유의 침략성이 결부되어 帝國主義의 侵略性이 배가되고 있었다고 본다. 日本帝國主義가 출범하면서 1904年 2月 露日戰爭을 도발하였는데 이 戰爭은 日本의 資本主義가 韓國과 滿洲에서 그들의 市場과 利權의 獨占이라는 帝國主義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帝國主義列強의 치열한 경합 속에서 특히 天皇制權力이 後進的 日本資本主義를 軍事力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싸운 帝國主義戰爭이었다.<sup>6)</sup> 따라서 侵略性을 띤 絶對主義의 天皇制體制下에서 軍部와 官僚, 그리고 조속한 財閥이 제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日本帝國主義는 第1次世界大戰에 참여하여 한때 東아시아에서 크게 弶창하였으나 帝國主義列強間의 모순이 겹쳐 日本의 對外政策은 커다란 전환을 면치 못하였으며 한편 國內政治에도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종래 日本의 大陸侵略을 주도해온 軍閥의 기세와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藩閥勢力이 쇠퇴하고 그대신 오랫동안 이들 세력과 併存해 온 政黨勢力이 독자적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戰後 好景氣를 맞이하여 大財閥은 한층 강화되었으나 天皇制權力과 밀착된 軍閥官僚獨裁에 반대하고 民衆運動의 호름은

4) 德川幕府末의 摂夷論指導者 吉田松陰은 「……和親하기로 一決한 이상 이쪽에서부터 信義를 저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금후에는 취하기 쉬운 朝鮮·滿洲·支那를 복속시켜 交易에서 美·露에 않은 것을 朝鮮·滿洲에서 土地로 보상을 찾으라」고 강변하였다.

5) P.J. Treat, 「美日外交關係史」 1卷, pp. 474-77.

6) 歷史學研究會 編, 「時代區分上の理論的諸問題」. 또한 小山弘徳, 淺田光輝 등은 「戰爭의 주도세력은 絶對主義의 天皇制權力이기는 하나 일부 조속한 獨占資本이 지원, 추진한 점에서 二重의 帝國主義」라고도 하였다(「日本帝國主義史」第1卷).

하나의 시대조류를 이루어 大正 대 모크라시 운동이 대두하였다. 여기서 日本에 政黨內閣時代가 개막되고 日帝의 對韓殖民政策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sup>7)</sup>

한편 第 1 次世界大戰을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革命運動이 일어났으며 植民地 종속국에서도 民族解放運動이 고조되었다. 그중에서도 帝政리시아에서는 1917年 11月에 소비에트共產政權이 수립되어 日本民衆과 韓國民族에게 적지 않은 影響을 미쳐 共產主義思想이 파급되었으며, 韓國에서는 日帝의 武斷政治에 항거하는 거족적인 3·1獨立運動이 발발하였다. 이에 당황한 日本은 植民政策을 전환하여 欺瞞의인 ‘文化政治’를 표방하였다.

그뒤 1927年 2月에 國民黨左派와 中國共產黨의 合作으로 武漢政府가 수립되고 세력을 확장하자 中國의 國民的 統合에 危機感을 느낀 日本의 獨占資本과 軍部는 中國侵略을 개시하였다. 즉 田中義一內閣(1927. 4~1927. 7)의 등장으로 民衆運動을 탄압하는 獨裁化와 가장 侵略的인 對中國侵略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결국 1931年에 滿洲事變을 도발한 것이다. 滿洲事變을 전후하여 日本國內政情은 軍隊武裝集團이 政治태리를 주도하여 이누카이(犬養毅)首相을 사살하는 5·15事件(1932年 5月 15日)의 발발로 準戰時體制로 돌입하였으며 一群의 青年將校의 쿠데타로 軍事政權의樹立을 강요한 이른바 2·26事件(1936年 2月 26日)이 발발하여 파시스트國家主義 新體制運動이 개막되었다.<sup>8)</sup>

日帝는 植民地韓國의 兵站基地化를 굳히고 獨・伊와의 同盟을 추구하면서 1937年 7月에 中日戰爭을 도발하였으며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日本은 최후의 발악으로 太平洋戰爭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그동안 軍部가 주동이 되어 侵略戰爭을 수행함에 있어 政治・經濟體制의 軍事化가 진행되어 1938年에 國家總動員體制에 들어 갔으며 1940年 10月에는 大政翼賛會를 발족시켜 第 2 次大戰 수행을 위한 全體主義統治體制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帝國主義는 (i) 移行期(1900~1918年 算소동) (ii) 危機의 激化期(1918年 算소동에서 1931年 滿洲事變까지) (iii) 戰爭時期(1931~1945)를 거치는데<sup>9)</sup> 첫째 時期에서 日本軍閥은 政治的 影響力を 증대해서 韓國의 主權을 침탈하고 武斷政治를 자행하였으며 마침 大正 대 모크라시運動으로 軍閥대신 政黨勢力이 드세하고 韓國에서도 3·1運動이 발발하자 對韓殖民政策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의 時期는 네모크라시 만연에 의한 國體의 危機, 赤化的 危機 및 大衆革命의 危機 등이 深化되는 가운데 國粹主義運動이 대두하고 中國侵略을 개시하여 滿洲事變을 도발하였으며 韓國에서는 ‘文化政治’를 표방하면서 植民支配를 深化시키는 동시에 大陸侵略을 위하여 兵站基地化했던 시기이었다. 세째의 時期

7) 吉野作造, “滿韓を観察して”, 「中央公論」, 1916年 6月號。

8) 新體制運動은 2·26事件 이후 大日本青年黨, 皇國勞動協議會, 維新政黨準備會 등 國粹團體가 중심이 되었다. 日本政府도 나치스독일, 파시스트이탈리아의 차극을 받아 國防國家建設을 슬로건으로 國論統一上 一國一黨의 全體主義政黨組織을 구성하려 하였다. 마침 1940年 近衛文麿內閣의 출현으로 政友會, 民政黨이하 모든 政黨이 解散되고 大政翼賛會가 결성되고 新體制가 세워진 것이다.

9) 抽著,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博英社, 1986, p. 36.

는 絶對主義天皇制下에서 總動員體制를 구축하여 侵略戰爭을 수행하고 韓國에서는 皇民化政策을 강요하고 戰時強制動員을 강행하다가 敗戰과 함께 日本帝國主義는 봉괴하고 마는 것이다.

以上 논술한 바와 같이 日本帝國主義의 形成과 展開過程에서 政治權力基盤으로서 해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絶對主義天皇制 支配體制라고 하겠다. 日本의 近代史에 있어 ‘天皇’은 매우 복잡다기한 것으로 본래 日本建國神話에서 기원하는 ‘現人神’으로서 政治的으로 神格化된 絶對主義支配者이다. 한편 天皇은 日常國民生活에까지 친밀하게 君臨하는 ‘最大最高’의 家父로서 精神界의 支配者이다.<sup>10)</sup> 따라서 日本의 天皇制 支配體制는 建國神話에 기초한 神聖不可侵의 絶對主義神國이며 東洋의 家族主義와 儒教의 忠孝思想을 기초로 하는 家父長國으로서 最高의 카리스마적 主權者에 의하여 통합된 支配體制이다.

明治政府는 이러한 天皇制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우선 義務教育制를 실시(1872年)하고 神道를 國教로 정하여 國民思想을 통제하는 동시에 근거도 없는 神武天皇의 即年年을 皇紀1年으로 하는 皇紀制度를 실시하였다. 또 明治政府는 天皇主義, 神道主義 및 家父長主義(將校는 兵士의 아버지) 등 中世的觀念을 指導理念으로 삼는 徵兵制度를 채택하여 日本軍隊의 基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天皇의 權力基盤을 강화하기 위하여 内務省을 창설하고 全國의 警察力を 강화하여 日本警察官僚의 기초를 구축하였다(1873年). 天皇制權力基盤强化의 한 방편으로 「華族令」을 제정하고 民選의 衆議院을 견제하는 貴族院을 만들었다.

한편 이러한 日本의 帝國主義의 擔當勢力으로서 軍部官僚가 그 추진력이 되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으나 보다 넓은 國民層에서는 國民의 中堅層을 형성하는 實踐的 行動分子로서 小工場, 小職場, 小學校, 마을官廳, 下級官吏, 軍隊下士官級 등 小集團에서 지도적 地位를 차지하고 마치 小宇宙에서 小天皇의 또는 家長的 權威를 가진 支配者로서 大衆의 思想과 人格을 통제하는 位置에 있는 所謂 亞인텔리層 또는 擬似인텔리層의 社會中間層이라는 說도 있으며<sup>11)</sup> 對外侵略의 先發隊로서 大陸浪人們의 暗躍이 注目되어 왔다.<sup>12)</sup>

### 3. 日帝植民政策의 展開

#### (1) 植民統治準備期(1905~1910)

##### ① 保護政治의 背景 및 本質

日帝의 韓國 ‘保護化’(1905年 11月)와 ‘併合’過程은 日本朝野의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韓國政府의 무능 그리고 일부 매국노의 반역행위 나아가서는 英國, 美國, 러시아를 위시한

10) 藤田省三, 「天皇制國家の支配原理」, 未來社, 1973, p. 7.

11)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上卷, 未來社, pp. 58-66.

12) 山邊健太郎, 「日本の韓國併合」, 太平出版社, 1973, pp. 17-18. 玄洋社, 黑龍會系統의 大陸浪人们은 大東亞主義를 표방하면서 侵略을 자행하였다.

帝國主義列強의 侵略協同과 承認하에 감행된 것이었다.

第1, 2次 英日同盟, Taft—가쓰라(桂)條約, 露日戰爭 등을 거치면서 帝國主義列強의 世界體系構築에 가담해서 歐美帝國으로부터 韓國에 대한 특수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은 일본은<sup>13)</sup> 한편 「韓國併合」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를 차차 진행해 나갔다. 즉 日帝는 서울을 不法强占한 후 「韓日議政書」(1904年 2月 23日)를 강요하여 한국영토에서 군사지배권을 확보하고 「第1次 韓日協約」(1904年 8月)을 통해 顧問政治를 실현하여 保護化의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서 「保護條約」을 강제 체결하여 韓國을 ‘指導·保護 및 監視’한다는 구실하에서 政治·經濟의 內政까지 간섭·지배하였다. 이 保護統治體制下에서 統監政治의 실시를 강요하여 植民地的 性格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侵略을 확대해 간 것이다.

日帝의 韓國支配體制形成에 있어 日本의 元老, 閣僚 및 軍閥 사이에서 武官組織의 軍政體制를 계속 유지하자는 日本陸軍軍閥측과 隊軍의 발호를 경계하여 文治組織을 주장하는 文官일파들 사이에 對立이 있었으나 결국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初代 統監으로 임명됨으로써 일단 文官支配體制로 낙착이 되었다. 그러나 文治的 支配路線은 어디까지나 표면적 형태이고 露日戰爭時의 兵力を 배경으로 실시된 軍政體制가 殘存하고 있는 테다가 武力에 의한 主權侵奪과 民族生存權의 박탈이 그들의 基本政策이었던 만큼 韓國殖民化初期부터 武斷統治的 支配形式을 떠었던 것이다. 더우기 韓國統監府 설치 아래로 심화된 反侵略民族抗爭으로 文治를 주장한 이토 자신이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軍隊와 憲兵을 증강시켜 抑壓的 治安體制를 구축해 간 것이다.

## ② 統治體制의 形成

韓國統監府 設置이후 日帝는 朝鮮王朝 傳來의 統治組織에 큰 수술을 가하여 그들의 支配體制로 정비하여 갔다. 統監政治 초기에는 韓日協約과 顧問·參與官을 통하여 韓國政府를 조종하였으나 급격한 官制改定을 삼갔다. 그러나 1907年 헤이그密使事件을 口實로 高宗帝廢位를 강제한 이토 統監은 그 여세를 휘몰아 丁未 7個條의 韓日新協約을 조인함으로써 韓國政府에 絶對權을 가지고 군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韓國軍隊를 해산시키고 顧問制度를 폐지하는 동시에 各部次官을 비롯한 要職에日本人을 배치하여 소위 次官政治를 강행하고 日本官僚를 통해 직접 政治·行政에 관여토록 한 후 곧 宮內府를 비롯하여 各部官制 및 地方官制 그리고 司法制度 등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또한 日帝는 排日運動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기 위하여 韓國駐劄軍隊·憲兵隊·警察

13) 第2次 英日同盟條約(1905年 8月 12日 調印) 第3條에 「日本은 韓國에서 政治, 軍事, 經濟의 으로 탁월한 이익을 보유하므로 英國은 日本이 그 利益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指導, 監理 및 保護조치를 한국에서 취하는 권한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露口講和條約 第2條와 字句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이 부합되는 조항이며 이것이 所謂 Taft—桂協定(1905年 7月 29日)과 더불어 乙巳保護條約(1905年 11月)의 기반이었던 것이다. R.J. Bartlett, *The Record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1954, p. 414.

官을 日軍司令官의 지휘·명령하에 통합시키고 韓國人 憲兵補助員을 배속시켜 軍隊式治安體制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治安을 軍隊에 依存함으로써 文治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며 그것은 統監府 期間을 거쳐 合併 후의 總督府 武斷統治體制의 原型을 이루는 것 있었다.

### ③ 經濟侵奪

統監府時期에 있어 日帝의 韓國에 대한 經濟侵略政策으로서 중요한 意味를 지닌 것은 國庫制度의 設立, 金融機關 및 貨幣의 整理, 徵稅制度의 改革, 皇室財政의 장악, 그리고 度支部에 量地局을 설치하여 강행한 土地測量調查事業의 착수와 土地收奪이었다. 이와 같은 侵略手段들을 통해 日帝는 韓國의 財政·金融을 그 지배하에 두고 農業을 완전히 통제하에 두어 食糧·工業原料·水產物·礦產物 등 資源을 약탈하는 동시에 物品販賣市場을 獨占했으며 나아가서 植民地經濟의 재편성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京釜線(1905年 1月 1日), 京義線(1906年 3月) 등 主要鐵道幹線을 開通하여 統監府鐵道管理局 소관으로 장악하고 또 韓國의 通信網을 委託받는 形式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이밖에 道路, 海運航路를 整備하여 將來 韓國의 政治, 軍事, 經濟的 侵略基盤을 構築하였다.

## (2) 植民統治形成期(1910~1919)

### ① 武斷統治의 背景 및 本質

‘合併’으로부터 3·1運動까지의 統治時期는 일반적으로 강대한 軍警權力を 배경으로 폭력적인 軍事統治를 자행한 ‘武斷統治期’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合併 후 總督府의 ‘武斷統治’는 이미 前期인 統監府時代에 그 原型이 형성된 日帝의 對韓植民支配形式의 한 특성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은 激化되는 反日民族運動에 위협을 느낀 日本支配層이 韓民族을 억압·통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사한 최후의 暴力的 支配裝置이었던 것이다. 日帝는 이 시기에 그 武斷的 支配權力を 기초로 韓國產業經濟를 예속화하고 본격적인 完全植民體制로 편성하는 제반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日本이 韓國을 강제로併合한 후 韓國에 대한 政策의 基調는 同化主義였으나 實際 法制上으로 韓國의 地位는 民族差別政策을 기초로 하는 日本의 屬領 또는 植民地였다. 따라서 韓國人의 法的 地位는 義務에 있어서는日本人으로 취급되고 權利에 있어서는日本人이 아닌 특이한 存在가 되었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 韓國民衆은 主權의 회복을 최대의 염원으로 생각하고 獨立을 목표로 하는 舉族的인 반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던 만큼 參政權問題가 논의되지는 않았다.

### ② 統治政策

合併 후 日本은 곧 大韓帝國의 國號를 朝鮮으로 改稱하고 植民地 支配體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朝鮮總督府官制」를 공포하였으며 初代總督으로는 陸軍大臣 겸 統監 데라우치(寺內正毅)를 임명하였다. 초기의 朝鮮總督府 機構는 종전의 統監府 機構를 계승하고 동시에 韓

國政府所屬官廳도 적당히 축소·흡수하여 과도적 성격을 떤 编制였는데 民生과 發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治安에 초점을 둔 간소한 機構로 정비한 데 특징이 있었다. 이를 機能別로 분류하면 최고통치기관인 總督과 그 補佐官인 政務總監 밑에 中央行政機關, 地方行政機關, 彈壓機關, 諮問調查機關, 同化政策機關, 經濟侵奪機關 등인데 이 支配裝置는 日本天皇에 直接 隸屬되어 莫強한 權限을 보유한 朝鮮總督을 사실상의 최고지배자로 하는 專制軍國統治體制로서 일찌기 韓民族의 政治史에서 가져보지 못하였던 武斷統治體制였다.

朝鮮總督統治의 핵심은 憲兵警察制度였는데 軍事組織인 憲兵이 警察權을 장악한 이 制度의 主役은 總督의 긴밀한 指揮·監督下에서 統合的인 二元組織을 형성하고 있는 警務總監부였다.<sup>14)</sup> 또한 直接統治方式을 特性으로 하였는데 日本이 統督統治 초기부터 철저한 直接統治方式으로 韩民族을 武斷的으로 지배한 根本動機는 韓國의 政治權力を 완전히 장악하여 富와 利權을 철저히 수탈하고 기만적인 同化政策을 표방하여 준엄한 民族抹殺政策을 강행함과 아울러 치열한 反侵略抗日民族鬪爭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植民地韓國에서 總督府組織의 行政·司法·警察 등 각 分野의 엘리트充員에 있어서는 民族勢力의 참여를 극력 봉쇄하고 韩國人은 總督府官僚organization의 말단 技能職에만 주로 충원하였을 뿐 극소수의 親日 韩國人을 포함하여 日本人이 모든 政治的 要職을 직접 독점하는 이론바 直接統治 또는 直轄的統治<sup>15)</sup>를 감행한 것이다.

한편 朝鮮總督府 및 그 所屬官署는 출범이래 日本의 國內外情勢와 韩民族의 抵抗에 대응하면서 수차의 改革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즉 대대적인 行政簡素化整理, 대규모의 行政組織의 再編成, 地方行政整理 등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통해 물샐틈 없는 集權的 行政組織을 정비하였다. 부득이 韩國人을 다수 地方官으로 채용하였으나 日帝는 이들을 親日的 中產層의 懷柔 및 民族分裂政策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 ③ 產業經濟政策

이 시기에 있어 日帝의 韩國에 대한 產業經濟政策의 기조는 韩國의 資本主義 成長을 극도로 억제하여 產業經濟를 日本의 그것에 예속화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日帝는 食糧과 工業原料를 탈취하고 日本資本主義의 獨占的 商品販賣市場으로서의

14) 寺内 初代總督과 明石 警務總長에 의하여 완성된 이 憲兵警察政治는 “全世界에서 類例가 없는 강력한 警察制度로서 朝鮮統治의 成功여부는 오로지 그 運用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日本人 專門家 자신도 슬퍼한 바 있다. 田保橋潔, 「朝鮮統治史論稿」, pp. 91-92.

15) 拙著, 「日本帝國主義의 韩國統治」, 博英社, 1986, pp. 278ff (표5-1, 2, 3), 192, 556 참고.

韓國人官吏任用狀況은 3·1運動 직전의 1918년도 朝鮮總督府 및 所屬官署의 職員(屬託, 履員包含)總數는 21,302명이었다. 그 중 韩國人은 8,437명(39.6%), 日本人은 12,865명이었다(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918년도, 제597표). 그러나 1920年末에는 總數 36,450명 중 韩國人은 14,157명(38.5%)으로서 약 1% 減少되었고(上揭書 1920年, 제 7면 제78표) 1925년에는 總數 41,458명 중 韩國人 14,771명(35.6%)(上揭書 1925年, 제 22면, 제 438~439표) 1926년도에는 總數 42,544명 중 韩國人은 15,293명(35.9%)(上揭書 1926년도, 제 439표)로 감소하였다. 上記 1920년 말과 1922년 이후의 官公吏總員數의 增加는 警察官의 增員과 地方廳機構擴張에 기인한 것이며 그것도 刑任官 이하의 屬託, 履員에 局限되었다.

植民地 經濟體制로 재편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우선 土地調查事業을 강행해서 韓國의 土地를 약탈하고 土地私有制를 구축하여 植民地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民族產業을 억제하고 日本資本의 적극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會社化을 공포함으로써 그 植民主義 工業政策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日帝의 經濟的 侵略은 鎳產物과 漁場의 침탈 그리고 약탈적 貿易政策에서도 나타났으니 이로써 日帝는 交通, 運輸, 通信, 金融, 財政 등 각 부분에 있어 植民地의 隸屬體制 再編과 함께 韓國經濟를 日本經濟에 완전히 예속화시키고 植民支配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 (3) 懷柔調整期(1919~1931)

#### ① 「文化政治」의 背景 및 本質

韓民族의 3·1獨立運動에 위협을 느낀 日帝는 종래의 支配方式을 조정하여 民族上層部의 懷柔와 民族分裂을 조장하고 經濟的 收奪을 강행하면서 일종의 植民政治의 타협형태로서 欺瞞的인 「文化政治」를 내걸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日本政府가 對韓植民政策으로서 「文化政治」를 표방한 것은 日本이 國內外의 으로 직면한 危機的 狀況에 대응하기 위한 궁여책이었다. 「文化政治」의 發想은 政治家 하라 사토시(原敬)가 外務次官 在職 前後부터 그의 持論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마침 그가 「平民宰相」으로 政黨內閣을 구성하고(1918年 9月) 또 3·1運動이 발발하자 軍部內의 반대를 무마하여 田中陸相의 折衷案을 閣議에서 채택한 것이다. 그것은 「內地延長主義」와 「同化主義」의 基本政策을 고수하면서 官制上 文武官 어느 쪽도 總督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는 懹柔의 명수인 海軍大將(豫備役)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기용한 것이다.<sup>16)</sup>

따라서 文化政治는 결코 본질적인 政治改革이나 對韓植民政策의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며 軍事力을 背景으로 한 統治方式의 本質을 一貫하게 유지하면서 고조되는 韓民族의 反日抵抗意識을 마비시키고 장차 더욱 가혹한 수탈과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擬裝策이었다. 그리고 文化政治는 同化政策을 심화시키고 韓國植民支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行政改革과 교활한 懹柔·分裂·支配政策을 위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 ② 統治政策—行政改革의 虛構性

사이토(齋藤) 總督은 文化政治를 표방하면서 施政計劃으로서 「文官 출신자도 總督이 될 수 있게」하였고 「普通警察制度를 실시」하는 行政改革을 비롯하여 그 밖에 行政機構의 축소와 통폐합, 行政의 集權化 완화, 직원채용에 있어 韓日人 차별의 철폐 등의 改革을 시도하

16) 日帝가 「文化政治」를 표방한 동기는 一部 論者の 주장같이 「軍事的, 封建的 帝國主義와 近代부르조와 帝國主義와의 相剋의 결과」(小山弘徳·淺田光輝, 「日本帝國主義史」2卷)도 아니고 또 日本獨占資本 展開의 論理의 彙結로서 日本에서 權力의 軸이 軍部勢力에서 부르조와적 力으로 이동했다는 데서 찾는 것도 옳지 않으며當時 그 改革을 실천하는 데 있어 軍部의 승락 또는 提携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政黨勢力과 軍關 사이에 해고모니를 위한 力均衡에 있어서 軍部가 일시적으로 劣勢에 몰리게 되면서 兩者間에妥協 또는 提携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였으며 아울러 社會慣行의 改變 등을 시도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行政改革의 실시는 기만적이고 허구적이었던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 文官이 總督에 취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普通警察制度도 사실상 軍警權力統治制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韓·日人 사이의 差別待遇 철폐 및 人材登用의 문호개방이라는 施策도 허구적 약속에 불과한 것이었다. ‘在來文化 및 慣行의 尊重’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傳統文化의 脫보를 유발하는 欺瞞的인 것이었다.

韓國人을 官吏에 등용하고 參政權을 擴大해 준다는 명목으로 地方制度를 개정하여 諮問機關에 韓國人을 참여시키고 直接統治로 인하여 발생하는 矛盾의 緩和와 더불어 對外政治宣傳을 위한 展示效果를 노렸으며 하등의 權限도 없는 諮問機關 설치를 「完全自治制」 실시를 위한 一階梯」라든가 「朝鮮人은 民度, 政治思想이 차별」하므로 「自治的訓練을 쌓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성급한 地方自治制의 실시는 「朝鮮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朝鮮人에게 불행」하다는 등 기만적 언사를 놓한 것이다.<sup>18)</sup> 기실 韓國人을 회유·매수·위협하는 政策에 의하여 民族運動去勢를 위한 安全瓣으로 삼았으며 民族分裂을 조장하고 支持基盤의 확대·강화를 도모하였다. 여기서 權力構造는 親日勢力조차 政權의 일부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철저한 直接統治體制로 되었다.

이밖에 教育, 新聞, 言論, 工業化, 交通, 通信 및 都市化 등의 부분적인 발전이 그들의 利益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요되었다. 결국 斎藤의 文化政治는 노골적인 武斷政治보다 훨씬 세련된 것으로 종래의 기본방침을 답습함과 아울러 內外의 危機狀況에 대처해서 事態發展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여건 하에서 시도된 植民統治手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③ 民族 懷柔·分裂·支配政策

民族獨立運動에 위협을 느낀 日帝는 軍備警察力を 강화하여 무력탄압과 지배를 확충하는 한편 親日買辦勢力의 育成과 民族主義右派의 타협적 부분을 親日傾向으로 포섭하여 親日分子를 育成·懷柔하고 民族分裂을 助長하였다.<sup>19)</sup> 즉 日帝는 貴族, 兩班, 儒生, 地主, 富豪, 實業家, 教育家, 宗教家 등 各階層 各分野의 各種 親日團體의 組織, 對日妥協的 文化運動에의 誘導, 各種 宗教團體의 御用化, 民族改良主義의 流布, 民族主義者の 회유, 民族協同

17) 當時 韓國統治를 담당했던 原敬首相의 「朝鮮統治方針」은 獨立不許, 自治不許, 地方自治許容, 朝鮮人の 帝國議會議員包囲, 在外朝鮮人保護取締, 文明的政治實施 등이며 (「朝鮮統治秘話」, pp. 156-161) 斎藤總督의 施政綱領은 「文化政治라고 일컬어지지만 牛島統治의 根本方針에는 조금도 相異한 바가 없는 治安維持, 民意暢達, 行政刷新, 國民生活安定, 文化 및 福利增進」 등을 표방하고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pp. 314-315) 施政計劃으로서 14個條目的 改革案을 提示하고 있으나 그 實施結果를 評價하면 欺瞞性과 虛構性을 드러내고 있다.

18) 斎藤實の地方制度改正一週年に際しての談話 (「朝鮮總督・政務總監の施政に關する論告・訓示並演説集」).

19) 姜東鎮,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東京大出版會, 1981, pp. 230-270; 斎藤實文書 742, “朝鮮民族運動に對する對策”.

運動分裂政策 등을 통해 植民體制 전반의 강화를 기도하였다. 이같이 親日分子를 앞세워 民族分裂支配의 수법을 쓴 결과 韓民族 内部에 깊은 相互不信風潮가 뿌리박게 되었고 民族意識을 말살시키고 自主意識을 마비시켰으며 수많은 爰國人士가 情報政治의 희생자가 되었다.

#### ④ 民族同化政策

日帝는 또한 學校施設을 확충하여 皇民化教育을 강화하고 民族同化教育과 民族抹殺文化政策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民族獨立思想의 탄압과 民族의 歷史와 文化的 말살 및 왜곡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행하였다. 韓國人 子女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위조하고 왜곡된 歷史教育을 주입시킴으로써 어려서부터 日帝의 臣民으로 만들기 위한 政治的 社會化를 강요하였으며 植民主義侵略을 합리화하여 韩民族의 獨立運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日本政府와 朝鮮總督府는 對內外政治宣傳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이는 당시의 韩民族의 獨立志向意志와 運動이 日帝植民支配의 한계를 자각케 할 정도로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日帝의 民族同化政策이 民族의 劣等意識, 植民史觀, 事大主義의 因習 등 많은 후유증을 오랫동안 韩國社會에 찬존케 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 ⑤ 產業經濟政策

한편 日帝는 植民地產業政策으로서 ‘產米增殖計劃’ 수행에 중점을 두고 韩國農業의 植民地의 米穀單種耕作構造로의 재편성을 일축 강화하였다. 아울러 ‘產業開發’ 이란 美名 하에 韩國米를 수탈하는 동시에 水利組合, 金融組合 그리고 東拓 등을 통하여 農民을 수탈하였으며 移植資本主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日本人 農業移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韩國農民은 滿洲 등 國外로 추방하였다. 또한 ‘林野調查事業’이라는 명목하에서 山林을 약탈하였고 日本工業原料로서의 棉花, 蔗을 획득하기 위하여 棉花栽培와 生薦增收 및 養蠶業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產米政策, 山林政策 및 產棉花蔗增收政策은 日本獨占資本과 地主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었으나 土地 敘는 韩國農民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오고 심각한 食糧問題를 야기케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韩國人の 반항도 거세었으니 이는 小作爭議 및 勞動爭議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以上 論述한 所謂「文化政治」라는 高次的 統治方式은 당연히 방대한 統治費를 필요로 한 것이며 그 統治費의 增大는 필연코 韩國民衆에 대한 收奪의 强化를 가져오고 이 또한 植民支配의 矛盾을 擴大再生產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결국 齋藤實 辭任후의 1920年代末에 이르러서는 ‘文化政治’라는 간판마저도 걸어치우고 다시 武斷的 本質을 드러내어 世界恐慌과 함께 공연한 軍事的 獨裁支配體制로 이행하게 되었다.

#### (4) 兵站基地化 및 戰時動員期(1931~1945)

##### ① 兵站基地化政策

日本이 1920년대 말기부터 軍部獨裁體制를 준비해 오던 중 韓國의 협약화된 정세는 日本支配層으로 하여금 滿洲에의 侵略擴大 없이는 韓國支配의 安定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1931년 滿洲事變을 도발케 하였으며 마침내 軍部와 官僚가 결탁해서 政黨內閣을 타도하고 軍部內閣이 등장하면서 植民地韓國을 日帝의 大陸侵略戰爭遂行을 위한 ‘大陸兵站基地’의 역할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日鮮滿 블럭經濟’政策을 표방하면서 植民地的 隸屬化를 일축 촉진하고 韓國民族의 強制動員과 軍需資源의 開發·掠奪에 광분하였다. 또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에의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掠奪戰爭을 더욱 강화하여 韓國의 모든 人力과 物的資源을 戰力化하기 위하여 兵站基地로서 전면적인 戰爭動員을 강제한 것이다.

### ② 戰時產業經濟政策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日帝는 日本獨占資本의 한국진출을 본격적으로 制度化하여 軍需產業體制로 재편성하면서 戰時 植民地經濟體制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農產物의 價格操作, 小作料·水利組合費·公課金 등의 과중한 부담, 食糧의 供出制 및 ‘道配’를 통한 國家管理, 그리고 ‘農村振興運動’ ‘南棉北羊’政策 등을 통하여 韓國의 農村·農民의 수탈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產金政策을 강행하고 軍需用 特殊礦物·稀有元素礦物을 개발하여 韓國의 地下資源을 수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金屬·化學·電氣 등 軍需工業을 강화하고 鐵道·港灣 등의 교통기관을 확장하는 등 철저한 軍需工業化를 통해서 韓國工業의 예속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戰時產業體制再編의 일환으로 강행된 ‘韓國의 工業化’는 韓國民의 資本成長이나 福祉增進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韓國民族經濟體制 자체로서는 植民地的 跛行性을 강하게 띠었으며, 그 식민지적 과행성은 韓國工業의 日本獨占資本에의 진반적 예속성, 工業部門과 他部門과의 유기적 관련성의 결여, 工業 각 부문의 成長의 不均衡性, 生產配置의 지역적 편파성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③ 人口政策

日帝가 韓國에 침입하여 그들의 社會的 基盤을 어떻게 구축하고 결과 社會的 構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人口 및 階層變動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買辦的 地主勢力의 확보를 위한 土地收奪政策의 결과 야기된 農耕의 영세성과 半封建的 小作關係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大地主로의 토지집중을 다른 한편으로는 半農奴的 貧農層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편 人口의 증가도 급격하였는데 이는 自然的 增加보다는 社會的 增加, 즉 한국에의 日本移民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滿洲·시베리아·日本으로의 韓人移住를 감안한다면 이는 日帝가 한국지배를 위하여 政治·行政·經濟 등 각 분야에서 日本人尖兵을 많이 增派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0)</sup>

20) 抽著, 「日本帝國主義の韓國統治」, pp. 460-465; 金泳謨, “日帝下 社會階層의 形成과 變動에 관한 研究,” 「日帝下의 民族生活史」, 民衆書館, 1971, p. 497 참조.

#### ④ 強制動員 및 民族抗拒彈壓政策

1930년대 후기 이래로 中國과 太平洋戰爭의 戰勢가 해가 갈수록 불리해지자 日帝는 戰力 을 보충하기 위해 青少年 및 學生을 소위 '特別志願兵制度'를 통해 日軍에 강제 편입시켰 으며 대규모의 '國民動員計劃'을 세워 韓國人壯年들을 強制勞務로 동원하였다. 또한 韓民族의 國內外에서의 反日抗拒·民族獨立運動이 활발해지자 그 對策과 支配體制의 강화에 몰 두하기에 이르러 民族抗拒運動의 탄압을 일층 강화하였다. 즉 日帝는 滿洲侵略開始 이래 韓國內에서 그 軍事·警察力を 증가하고 '思想犯' 단속을 위하여 特別高等係警察網을 확충 하였으며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극단히 억압하는 동시에 愛國者를 무자비하게 검거·투옥 또는 학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 ⑤ 皇民化政策

韓國合併 이래 韓民族을 말살하고 '皇國臣民'으로 同化시키기 위해 여러 方策을 써 온 日帝는 1930년대에 들어와서 侵略戰爭을 감행함에 따라 人的 資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경한 同化政策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總督府는 '大陸兵站基地化' 政策에 의거해서 同化를 위한 한 方策으로서 철저한 '皇民化' 政策을 강행한 것이다. '皇民化'運動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國民總力運動과 協和會의組織, 皇國臣民의 誓詞와 日本語의 강요, 創氏改名과 神社參拜의 강요, 皇民化教育의 강화, 韓國史의 歷曲·말살 등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유구한 民族史와 우수한 民族文化를 가진 韩民族을 말살하려는 日帝의 皇民化政策은 그것이 여하히 교묘하고 철저한 것이라도 결국 파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4. 日帝植民政策의 特性

#### (1) 對韓殖民統治의 背景

20世紀 以來의 日帝의 植民政策은 日本帝國主義의 形成과 그 展開過程을 배경으로 具現 된 것이다. 日本帝國主義는 日本의 조숙한 資本主義發展에의 요구와 軍閥을 배경으로 한 日本의 絶對主義天皇制 支配體制가 財閥과 官僚와 제휴하여 對外侵略性을 露呈한 것이며 이와 아울러 日本國民이 널리 가지고 있는 對外侵略主義的心理가 합쳐져서 그 特性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日帝의 對韓侵略은 군사적 침략에 바탕을 둔 政治的 支配體制의 형성과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經濟的 侵透와 친래의 '征韓論'에 뿌리를 둔 植民支配를 목적으로 하는 文化的 侵蝕이 병행되면서 政治·軍事的 侵略과 經濟的 侵奪, 그리고 文化的 侵蝕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자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日帝의 對韓侵略過程은 다른 西歐帝國主義 列強의 일반적인 침략방식과 相異한 면이 적지 않았다. 이 相異性을 가져온 원인을 규명한다면 그것은 日本天皇制 國家權力體制의 軍事的·帝國主義의 侵略性과

이러한 天皇制 國家權力を 배경으로 급속히 성장한 日本資本主義의 構造的 特質, 일본인의 전통적 對韓植民主義 편견과 文化的 컴플렉스 등 복합적 원인들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이 日本의 韓國侵略은 여러가지 국면에서 特質을 지니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政治·軍事·經濟分野의 侵略過程이 특이 할 뿐만 아니라 文化的·精神的 분야의 侵奪過程의 特質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日本天皇 3代(明治一大正一昭和)라는 오랜 期間을 거치면서 對韓侵略政策이 資本主義가 본래 지니고 있는 對外侵略性에다가 日本天皇制國家權力의 軍國主義의 性格을 배경으로 그 侵略性이 加重되었던 것이다. 거기다 日本 後進資本主義 經濟構造下에서 國內市場의 狹隘性과 西歐先進列強의 아시아進出 그리고 그 侵略의 위협에 대한 다급한 危機意識 등으로 말미암아 일종 그 侵略性이 준엄하게 배가된 점에서 그 特異性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나 日本의 韓國侵略이 이와 같이 歷史的으로 여러 局面에서 여러 要因을 내포하면서 慢行될수록 韓民族의 反侵略의 抗日民族運動은 매우 거세게 對應하여 展開되었다. 韓民族이 國내에서 植民侵略에 抵抗하여 각 分野에서 抗日鬪爭하고 海外各地에서 反日民族獨立運動을 꾸준히 展開하였기 때문에 日帝의 植民統治方式도 初期부터 軍事的 武斷統治方法으로 一貫한 것이며 아울러 親日 韓國人을 포함하여 日本人이 모든 政治的 要職을 직접 독점하는 直接統治方式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支配體制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 (2) 對韓植民政策의 이데올로기的 基調

우선 文化的·精神的 面에서 日本人들은 韓國에 대한 植民支配를合理化하기 위하여 여러 구실과 이데올로기를 조작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日帝의 韓國統治의 基本方針은 한 마디로 말해서 ‘同化政策’이었으니 이것은 韓民族의 主體意識을 빼앗고 日本人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韩民族抹殺政策을 말한다. 그것은 또 內地廷長主義를 표방하여 韓國人을 滿洲로 내몰고 대신 日本人을 新領土인 韓半島에 移住시키는 政策이었다.

이와 같은 日帝의 同化政策이 韩民族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음은 물론이고 日本人의 韓國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同化政策으로 인하여 i) 韩國人의 獨自的 民族으로서의 存在意識을 부정하는 意識 나아가서는 韩國人의 人間性 자체의 파괴까지 감행하는 非人道的인 준엄한 侵略心理 ii) 植民地 支配者로서 저지른 罪責에 대하여 그것은 韩國人에게 恩惠를 베푸는 것이라는 意識 iii) 韩國人에 대한 優越感과 蔑視感 등이 日本人 사이에서 형성되어 戰時期間에는 「皇國臣民化」運動으로 발전하였으며 戰後까지도 잔존해 온 것이다. 日本人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韩國에 대한 이러한 편견들은 明治 이후의 近代日本人의 韓國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래 日本의 古代國家 形成 이래 왜곡된 韩國史觀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日韓同祖論, 主體的 發展의 缺如論(他律性論, 停滯論, 脫亞論, 鮮滿不可分論, 封建制度缺如論 등), 征韓論 및 大東合邦論(大亞細亞主義) 등을 들 수 있다.

### (3) 經濟·軍事政策의 特性

前述한 이례을로기적 요인이 日本의 對韓侵略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政治·心理的 契機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經濟上·國防上의 요인이 특히 近代史 展開에 있어 침략의 근본적인 動因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日本帝國主義가 西歐先進國에 비하여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조속한 발전을 서둘러 추진하는 가운데 對內外的으로 軍事侵略的性格을 띠었던 것이며 日本은 對外的으로 先進資本主義列強의 침략으로부터 自國을 방어하는 동시에 自國의 資本主義成長에 필요한 韓半島·中國大陸에서의 原料 수탈과 投資對象 및 市場을 획득하기 위하여 武力を 앞세워 우리에게 門戶開放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생소한 資本主義의 經濟組織과 그 生活樣式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여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日帝는 韓半島를 군사적으로는 大陸侵略의 兵站基地로 삼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植民地로서의 수탈대상인 동시에 資本主義 大陸政策의 前進基地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韓國이近代화過程에 들어서면서부터 成長하기 시작한 資本主義의 經濟構造는 日帝植民支配下에서 韓民族의 自主的努力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日本資本主義의 利益을 위하여 또는 日本帝國主義의 侵略目的을 위하여 왜곡된 형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植民地政策은 결국 韓國을 근대적인 自主體制와는 배치되는 前近代의 식민주의 예속체제로 묶어 두려는 의도에서 획책된 것이므로 韓國의 政治·經濟는 依存的 不具의 체질을 면할 수는 없었다.

## 5. 日帝植民政策이 남긴 遺產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專制的이고 준엄한 것이었다. 그것은 軍事的 侵略에 바탕을 두고 軍事力中心의 統治方式으로 一貫한 政治的 支配體制의 형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經濟的 侵透를 목적으로 文化的 侵蝕이 유기적으로 병행되면서 자행된 때문이었다. 이 日帝植民政策의 영향은 극심한 것이어서 國內外의 光復運動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 온 民族主體性의 保存에도 불구하고 解放 후 國家建設과 國民統合 및 近代化過程에서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각 분야에서 적지 않은 後遺症을 부식시키고 심각한 상처와 부담을 안겨 준 것이다.

日帝時代의 統治는 主體性이나 正統性과 같은 民族的 規範을 捨棄하였기 때문에 韓民族의 利益을 위한 本質的近代化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韩國近代化의 基本的 方向을 歪曲시킨 似而非近代化를 가져온 결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하튼 외관상 傳統秩序에서 近代秩序으로의 이행이라는 時間的 性格을 띠고 많은 變革과 影響을 남기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비록 왜곡되고 간접적이긴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타난 近代國家的 體驗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48年 政府樹立 이후 政治엘리트 調達過程에서 反民族의이지만 훈련된 日帝官僚가 다시

起用될 수 있었던 것은 소극적이긴 하지만 日帝時代가 지니는 一面의 近代的 秩序에로의 制度化의 가능성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本稿에서는 日帝統治의 本質上 그 否定的 遺產에 중점을 두고 다음 몇 가지 점을 살펴보자 한다.

### (1) 政治文化의 歪曲

#### ① 民族性의 마비

日本의 植民統治의 기본방침이 ‘同化政策’으로서 그것은 韓民族의 主體意識을 빼앗고 日本人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韓民族抹殺政策이었음을 앞에서 논급한 바이다. 이에 따른 傳統文化의 歪曲은 日帝時代의 韓國人에게 民族的 自虐心과 退變的 氣質을 배양 시켜 결국 近代民族으로서의 主體性을 미비케 하는 後遺症을 남긴 것이다.

#### ② 不信·否定心理의 造成

日帝의 親日人士를 이용한 民族分裂·懷柔政策은 韩民族에게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單一民族 共同社會의 親和的 紐帶를 크게 봉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韓國人間에도 相互不信하는 부정적 풍토가 사회에 뿌리박게 하였다. 그리고 植民支配에 대한 抵抗과 否定心理는 植民統治過程뿐만 아니라 社會生活에 깊숙히 침투하여 反政府的 아노미 風潮를 體質化하였으며, 公共組織에 있어서는 上官에 대한 面從腹背心理와 부하에 대한 監督의 강화가 서로 악순환되는 官僚風土를 조성하게 되었다.

#### ③ 形式的 法規萬能主義

日帝 植民統治 下의 韩國에서는 獨逸法 또는 프러시아法을 계승한 日本 實定法體系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法의 支配’의 경우와는 달리 惡法도 形式上 法인 이상 언제나 統治와 行政에 대한 指針으로서 絶對的 優位性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獨逸의 公法이 우리에게 直輸入된 것이 아니고 日本의 前近代의이고 非合理的인 文化에 潲色되고 歪曲되면서 間接受容되었기 때문에 그 被害는 加重된 것이었다. 이러한 歪曲된 形式的 法規萬能主義의 因習은 그 후 韩國統治와 行政의 기본목표를 合目的性보다도 合法性·適法性에 두는 植民支配 秩序爲主의 폐단과 儀式主義의 폐단을 낳았다.

#### ④ 特別權力關係理論

公共行政管理關係를 私法關係와 본질상 상이하다고 하는 特別權力關係理論도 ‘無定量의 忠誠’을 강요하였던 바 이는 해방 후 統治權力의 本質에 대한 그릇된 認識, 上級者의 즉흥적 專斷, 機關長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사안일주의적 경향, 上級者에 대한 과잉충성경향, 面從腹背傾向, 上級者の 形式的 過剩團束 등의 病理現象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 ⑤ 權威主義

본래 韩國의 傳統文化는 儒教文化의 깊은 영향을 받아 權威主義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日帝의 독특한 天皇制 支配體制와 國法學이네올로기 및 植民主義 文化的 침투는 韩

國官僚制의 權威主義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官尊民卑的 思考에서 기인하는 行政責任의 부재현상과 權力志向의 행정풍토, 그리고 身分制의 支配服從關係를 오랫동안 잔존케 하였다.

#### ⑥ 民族主義抗拒와 暴力主義

세계역사상 類例가 없었던 日帝의 준엄한 對韓殖民政策에 항거하기 위하여 民族運動은 國內外에서 치열하게 꾸준히 展開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韓民族의 抗日民族主義意識이 知性人 사이에 고취되고 양양 또는 가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日帝의 彫壓이 강화되고 植民支配方式이 高次의으로 深化되면서 民族主義運動도 극한적인 暴力志向의 戰爭方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政治過程에서 民族主義가 여러가지 形態로 發顯되고 때로는 테러리즘, 暴力主義 武力抗爭 등의 行態가 解放 후까지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 (2) 自主的 指導性의 資質缺如

韓國에 대한 武力 中心의 支配를 憲兵警察에 의한 武斷政治 또는 文化政治라는 특수한 형식으로 밀고 나온 日本의 對韓政策은 總督府의 人事政策面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그것은 韓國人에게 지극히 제약적인 엘리트充員方式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總督이 政治的 充員에 있어서 실질上 專行權을 가지고 중요한 上位階層의 직위를日本人으로 하여금 점유케 함으로써 철저한 直接統治의 植民地政策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日帝殖民統治下의 直接統治의 人事政策으로 말미암아 韓國人에게 극소수의 親日派에게 日帝의 앞잡이로서 적합한 走狗的 資質만 가르쳐 주었을 뿐 自主的 指導性資質을 갖춘近代化的 政治엘리트를 양성할 기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韓國人에게自治能力을 배양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따라서 解放後 民族의 政治的 指導의 連結性을 완전히 단절한 것은 日帝殖民政策이 남긴 가장 큰 罪惡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 (3) 親日勢力의 後遺症

日帝殖民統治가 남긴 親日勢力은 建國過程에서 國家의 發展政策을 誤導하고 民族統合을 沮害함과 아울러 歷史的 責任에 대한 不惑症을 조성하고 對外依存心理와 機會主義 處世觀을 조장하는 등 民族精氣와 價值觀의 混亂을 가중시키는 根因이 되었다.

#### (4) 韓國經濟의 植民地的 跛行性

1930년대의 工業化政策으로 인해 韓國經濟體制는 植民地의 跛行性을 강하게 띠게 되었으며 그 식민지적 과행성은 韓國工業에 대해 日本獨占資本에의 전반적 예속성, 工業部門과 他部門과의 유기적 관련성의 결여, 工業 각 부문의 成長의 不均衡性, 生產配置의 地域的 편파성, 民族資本의 유약성과 技術水準의 저열성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朝鮮의 工業化’는 일본의 軍閥과 獨占的 財閥의 긴밀한 抱合關係에서 강력한 帝國

主義的 政治權力を 배경으로 강행된 戰時經濟的 工業化였던 만큼 民族資本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韓國經濟에 대한 地位는 轉落을 거듭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물론 1930년대의 經濟成長이 植民地經濟의 부산물로서 어느 정도 工業化 또는 資本主義化를 가져온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韓國經濟의 發展이나 近代化의 시작에서는 결정적으로 해독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韓國의 政治·行政을 포함한 民族社會의 총체적 發展과 近代화라는 시각에서 1930년대의 開發戰略이 남긴決定的이고 否定的 後遺症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日帝의 거의 化石化된 植民地의 異行性은 해방후 南北이 분단된 상황에서 야기된 經濟構造의 二重的 跛行性과 겹쳐 오랫동안 韓國의 政治·經濟의 體質을 취약화시킨 根因이 되었던 것이다.

#### (5) 都市化와 新興都市 發生

現代社會의 특징의 하나인 都市化傾向은 農業的 性格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韓國에서도 생겨났다.<sup>21)</sup> 그러나 한국의 都市化는日本人의 集住地域으로서 그들의 植民統治를 위한 거점 확보의 결과였던 것이며 또한 韓國民에 대한 가혹한 수탈 위에서 貧窮으로 인한 離村向都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특히 부산·청진·인천·원산·진남포·목포·신의주·대전 등은 日帝의 韓國植民地政策과 1930년대의 開發戰略에 의한 大陸前進兵站化政策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발전하게 된 신홍도시들이며 朝鮮王朝時代의 전통적인 도시로서 日帝의 植民政策에 부합하는 값어치를 가지지 못하는 都市는 별로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1920년대까지의 植民初期에는 日帝가 韓國을 食糧供給地로서 이용하려 하는 重農政策이 기본을 이루었기 때문에 北部地方의 都市가 南部地方보다 별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1930年代 이후는 北部地方에 많은 工場을 세우게 됨에 따라 北部地方에 커다란 都市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다.

#### (6) 기 타

그밖에 地方制度, 司法制度, 豫算制度, 法令 등에서 아직도 日帝 植民政策의 遺產과 영향이 잔존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 6. 結論

日帝의 韓國植民統治는 그 의관상의 近代的 變革의 表象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近代化에

21) 1910年の 韓國人口 1,331萬名중 11個 都市人口 總計는 56萬64名으로 4%에 해당하였다. 그것이 1920년에 總人口 17,289,983명 중 都市人口는 3.4%, 1925년에 19,522,945 명 중 都市人口는 4.4%, 1930년에 21,058,305명 중 5.6%, 1935년에 22,899,038명 중 7%, 1940년에 24,326,327명 중 14%, 1942년에 26,361,401명 중 14.4%로 각각 증가하였다(拙著, 前揭書, p. 465).

22) 實態調査결과에 의하면 日帝時代의 급속한 都市化過程은日本人의 가혹한 農村政策으로 因한 離農向都에 起因한 것이며 그 주된 동기는 貧困 때문이 있고 그 수는 解放이후 貧困 때문에 移住한 人口보다 많았다고 한다(李萬甲, “農村에서 都會地로—都市와 農村”, 「新社會 100年」韓國現代史 8, 新丘文化社, 1971, p. 261).

본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못하였다. 植民統治期間중 많은 变혁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日本의 利益만을 위하여 日本人官僚들의 직접적 관여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것도 韓國傳來의 前近代的 社會秩序의 本質을 조금도 전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他律의 으로 진행된 부득이한 變革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諸變革은 오히려 韓國近代化의 기본방향을 歪曲시키고 韓國의 主體性을 상실케 하는 損傷을 우리에게 안겨 준 것이다.

日本의 植民地統治期間중에 이루어진 諸變革 중에는 前近代的 封建社會의 諸矛盾의 부분적인 解除 또는 改革의 進行으로 평가할 만한 것도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先進歐美諸國보다 훨씬 뒤떨어진 半封建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또 그 자체 不合理한 固有文化를 가진 日本을 통하여 윤색되면서 강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植民地韓國에서 행한 改革은 기본적으로 韓國人에게 진정한 合理主義의 의미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日帝의 前近代的 非合理主義와 植民統治의 歪曲된 似而非近代化過程은 韓國의 前近代性을 더욱 조장시켜 韓國社會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日帝의 對韓植民政策의 基調를 이루는 同化政策은 우리 傳統의 固有文化를 歪曲하고 결국 民族의 말살을 획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民族主體性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民族文化의 단절 또는 世界文化와의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世界植民史上 그 유례를 보기 드문 한 극단한 範例를 남겼다. 이러한 준엄한 文化政策으로 말미암아 戰後의 建國過程에서 自主的民族意識의 발전과 國民統合에 큰 제약을 받았던 것이며 自主的指導性의 빈곤을 초래하는 등 가혹한 試練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